

	<b>규정</b> <b>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</b>	문서번호	TWP-A511
		제정일자	2015. 09. 15.
		개정일자	
		개정번호	페이지 1/3

## 목 차

- 제1조 목적
- 제2조 정의
- 제3조 구성
- 제4조 지원 및 기능
- 제5조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
- 제6조 장학금 지급
- 제7조 회의
- 제8조 보칙

## 부 칙

작성부서	학생처	제정일자	2015. 09. 15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	학생취업처장	교무처장	기획처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

## 규정

### 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

문서번호	TWP-A511
제정일자	2015. 09. 15.
개정일자	
개정번호	페이지 2/3

#### 개정이력
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0	2015. 09. 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규정 제정</li></ul>
1	2018. 02. 19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→ 기획처, 입학관리센터 → 입학처 학생처/취업지원처 → 학생취업처</li><li>- 전공주임교수 → 학과장 변경</li></ul>
2	2020. 07. 2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 → 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 변경</li></ul>

	규정	문서번호	TWP-A511
	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	제정일자	2015. 09. 15.
		개정일자	
		개정번호	페이지 3/3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소수집단학생에게 필요한 교수·학습·시설·설비 등을 지원하여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07.21>

**제2조(정의)**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원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.<개정 2020.07.21>

1. 장애학생
2. 외국인 유학생
3. 다문화가족 학생
4.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

**제3조(구성)** 소수집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본교 학생취업처 내 소수집단학생 지원 담당자를 둔다.<개정 2020.07.21>

**제4조(지원 및 기능)** 소수집단학생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0.07.21>

1. 소수집단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
2. 소수집단 학생의 학사 및 진로, 취업상담에 관한 사항
3.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지원업무 담당자 교육)** 소수집단 학생지원업무 담당자는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20.07.21>

**제6조(장학금 지급)** 소수집단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20.07.21>

**제7조(회의)** 소수집단 학생의 지원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20.07.21>

**제8조(보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반 규정이나 총장의 승인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20.07.21>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